

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

법령명

-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안

2026. 4. 6.

법 제 처

관보시스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입법예고 요청 시 법제처와 협의한 입법예고기간을 엄수해 주시고, 입법예고기간 등 협의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제처와 다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단축 사유(국방부)

- 「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」 제정안에는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식재료 조달업무 위탁대상, 식재료 품질관리기준, 위생·안전관리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
- 「군급식기본법」 및 「군급식기본법 시행령」은 '26.1.26.일부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「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」은 제때마련이 되지 않아 입법지연이 발생하였으며, 특히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(법 제18조)와 연계된 식재료 품질·위생·안전관리기준이 시행규칙에 포함됨
- 따라서,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음
- 향후 일정
 - 관계기관 의견조회('26. 4. 3. ~ '26. 4. 16.)
 - 입법예고('26. 4. 9. ~ '26. 4. 22.)
 - 공포('26. 4. 30.)
- 입법예고기간 : 13일간('26. 4. 9. ~ 4. 22.)

□ 검토 의견(법제처)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르면, 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,
 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3조에서 정한 법령의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안은 「군급식기본법」 및 「군급식기본법」이 제정

및 시행됨('26.1.26.)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 군급식위원회의 운영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.

- 위 개정 주요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부처의 의견과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크게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.

- 입법예고기간 : 13일간